

2021년 투자용 기술평가비용 지원사업 안내(KIAT)

1. 지원내용 - 투자심사용 기술평가 비용 지원

투자심사용 기술평가지, 기술평가비용 지원(150만원), 기업or투자사 부담(15만원, VAT)

지원항목	평가수행기관	기술평가비용	정부지원금
투자기구에 의한 사업화자금 투자심사용 기술평가 비용 지원	한국기업데이터(주) *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해 지정된 기술평가기관	150만원 (부가세 별도이며 <u>부가세는 신청기업 납부하며 환급가능</u>)	150만원

※ 평가지원금은 평가 완료후 평가기관으로 직접 지원, 실제 투자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

※ 평가지원금은 기업당 사업기간내(~21.11.30) 1회로 제한, 과거에 동일 기술에 대해 평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재지원하지 않음

2. 신청자격

(1) 투자받을 기업

「중소기업기본법」 및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」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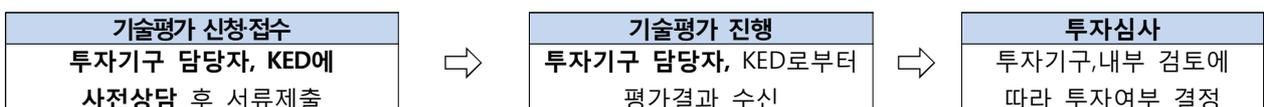
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1)를 보유한 기업

(2) 투자사 요건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-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의한 한국벤처투자 -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-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창업·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-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 (증권회사) - 「은행법」에 의한 일반은행(시중은행, 지방은행) 및 「중소기업은행법」 등 개별 특수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(농협은행, 수협은행, 중소기업은행, 한국산업은행, 한국수출입은행)의 투자부서 - 기타 투자관련 법령에서 정한 투자기구 중 동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투자기구 등
--

※ 기타 투자기구 등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투자사의 제한이 없음

3. 사업 진행절차



4. 문의처

최희진 부부장(02-3215-2362, narichoi@kedkorea.com), 김민환 차장/변리사(02-3215-2498, mhkim@kedkorea.com)

1) 인정서 등의 제출서류 필수